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한철우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보공개 확대 추진을 위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안 제2조)
 - 범위확대 : 행정정보 → 정보
 - 대상기관 확대 :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지정
- 공표범위 및 목록 게시 방법 신설(안 제5조)
 - 정보공표 범위를 일부 항목에서 도민이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모두 공표하는 것으로 범위 확대
 - 공표목록을 연 1회 이상 도 홈페이지에 게시 의무화

○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 정비 및 개정(안 제9조 ~ 제14조)

- 위원장 당연직 →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당연직 위원 :

행정부지사, 안전행정국장 → 안전행정국장, 총무과장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제 신설(안 제15조)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보공개 확대추진을 위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지정하고,

안 제5조에서 도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모두 공표하는 것으로 정보공표 범위를 확대하며, 공표목록을 연 1회 이상 도 홈페이지 게시를 의무화 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당연직 위원을 행정부지사, 안전행정국장에서 안전행정국장, 총무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 3.0 추진과제에 부응하도록 정보공개
개의 범위 및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